

(주)아이피엔	행 동 강 령	문서번호 IPN-윤리-A-01
제정일: 2024-09-25		개정차수: 0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직 책	관리이사		대표이사
성 명	김승태 이사		이성은
서 명	Signed		Approved
일 자	2024-09-25		

개정 이력

차수	제(개)정 일자	시행일자	주요 개정 내용
0	2024-09-25	2024-09-25	초도 제정

(주)아이피엔	행 동 강 령	문서번호 IPN-윤리-A-01
제정일: 2024-09-25		개정차수: 0

목차

서문

1. 업무윤리 및 반부패

1.1 이해상충

1.2 정당한 업무수행

1.3 반부패

2. 인간존중 실현

2.1 인권. 노동

2.2 업무환경

2.3 책임있는 광물 구매

3. 안전최우선

3.1 제품안전

3.2 산업안전

4. 정보 및 지식재산 보호

4.1 개인정보

4.2 영업비밀

4.3 지식재산권

5.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활동

5.1 공정거래

5.2 회계. 세무

5.3 관세

6. 공동체에 대한 책임

6.1 고객. 주주

6.2 사회공헌

6.3 환경

6.4 사업파트너

(주)아이피엔	행 동 강 령	문서번호 IPN-윤리-A-01
제정일: 2024-09-25		개정차수: 0

서문

정책준수 선언

아이피엔은 창의적 사고와 끝없는 도전을 추구하는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윤리적 책임을 다하여 더욱 신뢰받는 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며, 이에 본 행동강령을 모든 경영활동 및 임직원 직무수행의 올바른 가치판단 및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자 합니다. 본 행동강령은 모든 아이피엔 임직원의 업무방식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며, 아이피엔의 윤리적 사업관행 및 법률 준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반영합니다. 아이피엔은 국내외 모든 사업활동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각 지역의 거래규범을 존중합니다. 만일지역의 법률·관습이 본 행동강령과 충돌할 경우, 준법지원부서에 자문을 구하십시오.

<p>(주)아이피엔</p>	<h1>행 동 강 령</h1>	<p>문서번호 IPN-윤리-A-01</p>
<p>제정일: 2024-09-25</p>		<p>개정차수: 0</p>

적용대상

본 행동강령은 아이피엔 및 아이피엔이 지배권을 갖는 국내/외 자회사에 재직중인 임직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아이피엔은 합작회사, 협력회사 및 이해관계자가 본 행동강령을 채택하고 준수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의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아이피엔을 대표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아이피엔 임직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회사의 평판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본 행동강령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업무상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특히 개인적인 직무 책임과 관련되는 규정의 상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모든 아이피엔 임직원은 본 행동강령을 위반하거나 아이피엔의 명성에 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중지 또는 예방하고, 그러한 일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하는 즉시 관리자 및 준법지원부서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행동강령상의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에게는 적절한 징계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반사례의 제보

본 행동강령·관련 가이드라인 위반 및 기타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내용을 준법지원부서에 제보하십시오. 아이피엔은 다양한 제보채널을 구축하고 있으며, 위반행위 제보와 관련한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익명성 및 정보의 비밀유지를 보장하며, 제보는 철저한 검토 후 신중하게 처리됩니다.

(주)아이피엔	행 동 강 령	문서번호 IPN-윤리-A-01
제정일: 2024-09-25		개정차수: 0

1. 업무윤리 및 반부패

1.1 이해상충

원칙

아이피엔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회사와 개인의 이해충돌상황을 피하도록 하여야 하며, 회사 자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해상충행위의 금지

‘이해관계자’란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사내·외의 모든 관계자를 말합니다. 개인과 회사의 이해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행위는 금지되며 여기에는 협력회사에 대한 지분투자, 친인척과의 거래, 겸업, 겸직, 회사 차원의 의견개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외부활동 등이 포함됩니다. 이해관계 상충 상황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에 준법지원부서로 자문을 구하십시오.

주식·자산의 매매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 회사의 주요 내부정보를 임직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주요 내부정보’란 기업인수 및 합병, 이익배당정책, 주요 연구성과 등 주식이나 유가증권의 가치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되지 않은 정보를 의미합니다. 내부정보를 바탕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입 또는 매입 권유, 회사의 신규투자과 관련된 자산투자활동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자산의 보호

아이피엔의 자산 및 시설은 사업을 수행하거나 회사가 승인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자산에는 물리적·지식재산 및 각종 비품, 장비, 시설 일체가 포함되며, 회사 자산을 개인·제 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절취·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p>(주)아이피엔</p>	<h1>행 동 강 령</h1>	<p>문서번호 IPN-윤리-A-01</p>
<p>제정일: 2024-09-25</p>		<p>개정차수: 0</p>

1.2 정당한 업무수행

원칙

아이피엔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부당한 지시나 압력도 배격하며, 모든 직무를 직위·직책상 의무를 다하여 규정에 따라 정직하고 공정하게 수행합니다.

업무규정 준수

모든 업무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의사결정과 관련한 자료는 보존연한을 준수하여 무단으로 멸실·훼손·은닉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의사결정 관련 문서는 전결규정 및 기타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부당한 업무지시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의를 지켜야 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압력을 가해서는 안됩니다. 업무지시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을 정도로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인지하였다면, 단지 업무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해당 업무지시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개인적인 불이익을 당할 경우, 준법지원부서에 상담을 구하십시오.

계약의 체결

협상 및 계약서 작성·체결은 위임된 권한 안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모든 계약은 회사 규정·절차 및 관련 법규에 따른 합법적인 서면 계약서(전자계약 포함)의 작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모든 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모든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고 계약의 결과는 적절한 방식으로 기록·보관되어야 합니다

1.3 반부패

원칙

<p>(주)아이피엔</p>	<h1>행 동 강 령</h1>	<p>문서번호 IPN-윤리-A-01</p>
<p>제정일: 2024-09-25</p>		<p>개정차수: 0</p>

아이피엔은 각 국가별 부패방지 법규를 준수하며, 이해관계자에게 모든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부정한 청탁·청탁 수락 및 이익 요구·수수·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뇌물

부패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위임된 권한을 오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패행위는 지위를 공고히 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하여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경제상 이익은 금품·자산·서비스·특혜조건의 지급 등이며 이를 약속이나 제안하는 것만으로도 부패행위에 해당되어 징계규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이피엔은 업무와 관련한 일체의 뇌물이나 리베이트의 제공·수수를 금지하며, UN 부패방지협약 및 각 국가의 반부패 관련 법률 등을 준수하고,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아이피엔은 정부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소정의 뇌물을 지불하여 일상적인 절차 처리 속도를 높이거나 행정상 지연을 피하고자 하는 행위, 이른바 급행료를 금지합니다.

자선적인 기부 및 후원은 내부 집행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하며, 정치적 목적의 기부 및 후원을 금지합니다. 부당한 경제상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제안하는 것만으로도 부패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선물 및 접대

통상적 수준의 선물과 접대는 사업 파트너 간 소통의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업무 관행상 일상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통상적 수준을 넘어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뇌물 수수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니 거절하거나 제안에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선물 및 접대에는 금품 등 금전적 이익뿐만 아니라 편의를 제공하는 일체의 비금전적 유익도 포함됩니다.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법지원부서에 자문을 구하십시오

정치중립

<p>(주)아이피엔</p>	<h1>행 동 강 령</h1>	<p>문서번호 IPN-윤리-A-01</p>
<p>제정일: 2024-09-25</p>		<p>개정차수: 0</p>

아이피엔은 특정 후보자나 정치조직 및 기타 정책수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단체에 정치 관련 목적으로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치 기부는 금전뿐만 아니라 회사 자산 일체 및 직원의 정치활동 지원을 포함합니다. 아이피엔은 임직원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하되 회사 내에서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 차원의 정치 관련 기부는 사전에 준법지원부서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2. 인간존중 실현

2.1 인권·노동

원칙

아이피엔은 모든 구성원·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보호하며 어떠한 부당한 차별도 하지 않으며, UN 세계인권선언 및 이행원칙 등 국제 인권기준·규범과 각국 노동법규를 준수합니다.

인권보호정책

아이피엔은 모든 업무수행 및 제품·서비스 제공 전반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을 존중합니다. UN 세계인권선언 및 회사의 인권보호정책에 따라 노동력 착취 및 비자발적 고용을 금지하며, 여기에는 아동 및 청소년의 근로, 노예제도·인신매매를 포함한 정신적·신체적 구속에 따른 강제노동 등 비인도적 행위 일체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원칙은 회사의 임직원뿐 아니라 사업 파트너 등 아이피엔의 사업·투자활동 전반에 적용됩니다.

노동관계법 준수

아이피엔은 직원들이 자유의사에 반하여 근무하도록 강요하지 않으며,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에 부합하는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조합 가입 및 결성,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습니다. 임직원의 고용 및 해고,

<p>(주)아이피엔</p>	<h1>행 동 강 령</h1>	<p>문서번호 IPN-윤리-A-01</p>
<p>제정일: 2024-09-25</p>		<p>개정차수: 0</p>

근무시간, 최저임금 및 초과근로수당, 사회보험 가입, 휴식/휴가 제공 의무 등은 각국 법령에 따른 기준을 준수합니다.

차별금지

아이피엔은 임직원의 다양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다른 생각이나 관점·신념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포용력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임직원 고용 시 인종·피부색·종교·나이·성별·혼인상태·출신국가·정치적 견해·사회적 신분·장애 여부 등 어떠한 이유로도 누구든 차별하지 않는 것을 기본 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급여·복리후생·진급·징계 등 고용 및 근로조건에서 어떠한 부당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2.2 업무환경

원칙

아이피엔은 임직원 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써 존중하고 비인격적 행위를 근절하며,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역동적 조직문화를 지향합니다.

비인격적 행위 금지

아이피엔은 상호존중의 분위기 속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며, 임직원을 폭언·폭설, 폭력,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어적·시각적·신체적 괴롭힘 일체로부터 보호합니다. 비인격적 행위는 직접적인 욕설, 위협뿐 아니라 모욕적 느낌을 줄 수 있는 일체의 언어 및 행동을 포함합니다. 아이피엔은 비인격적 행위와 관련한 불만에 대해 신중히 검토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임직원이 잠재적 위험 사항에 대해 편하게 제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야 합니다. 비인격적 행위에 대한 제보 또는 조사에 협조를 이유로 보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약물남용 금지

아이피엔은 임직원의 건강 및 복리후생 보호 및 건전한 근무문화 정착을 위해 약물 남용이 없는 환경을 지향합니다. 업무 중 불법 또는 밀반입된 마약 및 항정신성약물의

<p>(주)아이피엔</p>	<h1>행 동 강 령</h1>	<p>문서번호 IPN-윤리-A-01</p>
<p>제정일: 2024-09-25</p>		<p>개정차수: 0</p>

사용 및 소지·제조·배포·운반·판매·무료제공·홍보 등 일체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약물류 사용에 따른 부작용의 징후로 판단력·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행동에 이상이 있다고 간주될 경우 아이피엔은 해당 임직원에게 약물남용정책 위반에 따른 조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약물남용정책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요청을 거부하는 임직원은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무환경 향상

아이피엔은 임직원 개개인이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 향상을 위한 제반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자율적·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문화·환경을 조성합니다. 단순 근무환경 개선을 넘어 임직원의 전방위적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며, 여기에는 각종 복지후생 향상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2.3 책임 있는 광물 구매

원칙

아이피엔은 국제적으로 규제되는 분쟁광물/책임광물의 사용 등 제품 생산과정에서 비윤리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광물 구매 정책

아이피엔은 분쟁 및 고위험지역에서 광물 채굴로 인해 야기되는 인권침해와 환경파괴를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분쟁의 자금줄이 되지 않고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식으로 채굴된 '책임 있는 광물 (Responsible Minerals)'공급망 구축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피엔은 'OECD Due Diligence Guidance'를 기반으로, 분쟁광물/책임광물 사용에 있어 해당 국가의 법을 준수하며, 제품생산 과정에서 비윤리적으로 채굴된 광물(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코발트 등) 사용과 관련한 거래·사업활동 전반에서의 인권침해와 환경파괴 우려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p>(주)아이피엔</p>	<h1>행 동 강 령</h1>	<p>문서번호 IPN-윤리-A-01</p>
<p>제정일: 2024-09-25</p>		<p>개정차수: 0</p>

아이피엔의 협력회사 또한 분쟁광물/책임광물 관련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글로벌 제 3 자 인증을 획득한 제련소, 정련소와의 거래 원칙이 포함됩니다. 아이피엔은 공급사슬 전반에 걸쳐 불법적·비윤리적으로 생산되는 광물 사용이 없도록 협력회사와 공동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안전 최우선

3.1 제품안전

원칙

아이피엔은 제품안전 및 품질 관련 국가별 제반 법규 및 회사 기준을 준수하고 제조물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과 타협하지 않고 최고의 품질과 신뢰성을 갖춘 안전한 제품을 공급합니다.

품질안전 관리체계

아이피엔은 최고 수준의 안전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품설계 및 생산 과정에서 엄격한 품질보증 검사를 실시하며, IATF 16949/ISO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등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품질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자동차 안전과 제조물 책임법을 기반으로 설계 및 생산시 제품안전 규제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규정의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제품을 설계하거나 설계를 변경할 때에는 안전성이 입증된 최신의 설계절차에 따라야 하며, 새로운 설계의 착수단계부터 제품안전 이슈를 염두에 두고 안전개선을 위한 설계 및 변경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은 사전에 차단되며, 이는 물질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담당자는 물질정보의 정합성 확인 및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제품의 화학물질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재질변경시 물질정보 변경이 프로세스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p>(주)아이피엔</p>	<h1>행 동 강 령</h1>	<p>문서번호 IPN-윤리-A-01</p>
<p>제정일: 2024-09-25</p>		<p>개정차수: 0</p>

문서화

설계 및 생산 담당자는 제품안전에 대한 판단을 입증할 증거를 명시하기 위하여 제안단계부터 변경의 최종 결정·승인 및 시행까지 설계 및 생산 변경에 대한 안전 근거 및 개선사항을 문서화 또는 전산화 하여 작업 산출물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설계나 생산 변경이 전문적인 자료나 분석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안전 근거 또는 개선사항을 일반용어로 요약하여 필요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외구매

제품안전 문제는 아이피엔이 부적격 업체로부터 부품 또는 자재를 대외 구매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업체의 선정 또는 대외 구매시 해당 업체가 아이피엔의 설계 및 품질보증 기준을 준수하는지, 조달부품의 안전·품질에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보고 및 대응

아이피엔은 제품 안전문제를 철저하게 검토하여 처리합니다. 업무 또는 외부에서 알게 된 제품안전·리콜 대상으로 생각되는 문제가 있다면 즉시 회사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피엔 제품안전 관련 문의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임의로 응답하여서는 안 되며, 담당 부서 및 관리자의 확인을 거쳐 회사의 공식의견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3.2 산업안전

원칙

아이피엔은 안전한 사업장 유지·관리 및 임직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에 최선을 다합니다.

산업재해

<p>(주)아이피엔</p>	<h1>행 동 강 령</h1>	<p>문서번호 IPN-윤리-A-01</p>
<p>제정일: 2024-09-25</p>		<p>개정차수: 0</p>

아이피엔은 유해물질 및 재해·위험을 사전 예방·관리하며, 모든 작업 수행 전 위험성 평가를 통해 적절한 위험예방조치를 설계·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안전한 작업장 설계 및 위험예방조치·안전수칙에 따른 작업수행·보호장비 제공·지속적 안전교육 등을 통해 모든 임직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며, 이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사업장별 안전환경담당자 선임 및 OHSAS 18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인증)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대응조치

모든 임직원은 보건·안전 관련 제반 법규 및 회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 사고가 우려되는 관행이나 상태를 발견할 경우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십시오. 안전관리담당자는 산업재해의 발생 또는 발생할 위험에 대해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4. 정보 및 지식재산 보호

4.1 개인정보

원칙

아이피엔은 국가별 개인정보 처리·보호에 관련한 법률 및 회사의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준수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취득한 개인정보는 업무상의 정당한 목적에 따라서만 처리하고 불법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관리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소, 연락처 및 영상, 사진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아이피엔은 관련 법규에 따라 개인정보를 정당하고 필수적인 목적에 한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최소한으로 수집하며, 수집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제 3 자에게 제공하지

<p>(주)아이피엔</p>	<h1>행 동 강 령</h1>	<p>문서번호 IPN-윤리-A-01</p>
<p>제정일: 2024-09-25</p>		<p>개정차수: 0</p>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직원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며, 아이피엔은 개인정보 보호 및 침해사고 예방을 위하여 개인정보 취급자에게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프로그램에는 국가별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기본 법제 내용과 회사의 개인정보보호 원칙, 수집한 개인정보의 유출금지와 관련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개인정보 보호조치

아이피엔은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내부적 관리·감독계획의 수립·시행, 접근통제장치의 설치·운영, 개인정보 암호화, 해킹 방지대책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 임직원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법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스템 보안을 유지하고 증진시킬 수 있도록 관리하고, 해당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합니다.

보고 및 대응조치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리자 및 보안 담당자, 준법지원부서에 즉시 보고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십시오. 또한 개인식별정보의 도용 등 개인정보 오용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으로부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보주체에게 침해사실을 신속하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4.2 영업비밀

원칙

아이피엔은 타사의 영업비밀 또는 기타 비밀정보를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사용하지 않습니다.

회사정보 보호

<p>(주)아이피엔</p>	<h1>행 동 강 령</h1>	<p>문서번호 IPN-윤리-A-01</p>
<p>제정일: 2024-09-25</p>		<p>개정차수: 0</p>

회사의 모든 자료는 보안규정에 근거하여 관리·보호되어야 하며, 모든 아이피엔 임직원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회사정보 일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 재무·기술·제품·사용자 정보 일체는 회사의 비밀정보에 해당되며, 여기에는 전략·사업계획, 경영변동사항, 인수합병 등 회사가 일반 대중을 위해 작성되지 않은 모든 정보가 포함됩니다.

절차에 근거하지 않은 절취·기망·협박 등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비밀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아이피엔 임직원은 직무 중 취득한 자료·정보를 회사가 지정한 유·무형의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이는 재직기간뿐만 아니라 퇴직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회사정보를 외부에 공유하고자 할 경우 회사의 승인을 득하고, 필요시 적절한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십시오.

타사의 영업비밀

영업비밀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비밀로 주로 생산·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하나, 폭넓게는 시장에서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스스로 개발하고 비밀로 유지한 기술·경영정보 일체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이피엔은 도청·해킹·뇌물 등 불법적·비윤리적 수단을 활용하여 경쟁사의 사업정보 취득을 시도하거나, 영업비밀의 탈취를 목적으로 경쟁사의 핵심인력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계약관계에 의하여 타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할 경우에는 제공자가 정당한 권한을 가졌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비밀유지협약 하에 제공받은 타사의 비밀정보는 해당 조건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4.3 지식재산권

원칙

아이피엔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며, 정당하게 권한을 획득한 경우에 한하여 제 3 자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합니다.

<p>(주)아이피엔</p>	<h1>행 동 강 령</h1>	<p>문서번호 IPN-윤리-A-01</p>
<p>제정일: 2024-09-25</p>		<p>개정차수: 0</p>

지식재산권의 보호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 중에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한 법적 권리이며, 여기에는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신지식재산권에 따라 보호받는 일체의 노하우 등이 포함됩니다.

아이피엔은 각국에 적법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을 통해 회사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피엔 임직원은 회사 지식재산의 사용·복사·배포·저장 및 처리와 관련하여 일체의 무단·불법 사용 및 미승인 반출을 하여서는 안 되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직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직무와 관련하여 창작한 아이피엔의 지식재산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도 회사가 소유권을 갖습니다.

제 3 자의 지식재산권

아이피엔은 제 3 자의 지식재산권을 무단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아이피엔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제 3 자의 소프트웨어 및 저작물을 법률에 허용된 범위와 해당 라이선스 조건을 준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를 이용할 경우 아이피엔이 해당 정보를 사용하기 위한 라이선스 또는 다른 법적 허락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제품은 해당 국가에 수입이 금지되거나 각 국의 관세당국에 의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부품을 구매할 경우 해당 업체가 해당 부품과 관련된 지식재산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지 공급업체에게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여부를 문서로 요청하고,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공급업체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모든 아이피엔 임직원은 마케팅 프로그램 또는 자동차 산업에 관한 사항들을 공개 또는 발표하여 사업상 현안에 관여할 때에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업무 중 사용하는 자산 또는 지식이 지식재산권 보호대상인지 법적 권리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주)아이피엔	<h1>행 동 강 령</h1>	문서번호 IPN-윤리-A-01
제정일: 2024-09-25		개정차수: 0

지식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 등 모든 소송 및 기타 정부기관의 조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준법지원부서에 관련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채용

지식재산권은 이직하는 임직원으로 인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 채용 및 해고 시에는 지식재산권 준수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설계·기술 개발·상표·저작권 또는 고객 목록 등의 비밀정보를 사용하는 인력을 채용할 때에는 채용예정인 직원에게 임퇴직하면서 이전 회사에서 영업비밀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전회사의 어떤 영업비밀도 아이피엔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5.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활동

5.1 공정거래

원칙

아이피엔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가격으로 최상의 제품을 공급하여 소비자 이익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며, 국가별 독점금지·공정거래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담합 및 가격

아이피엔은 건전한 시장경쟁질서를 준수하며 가격 및 생산량 조정 또는 입찰공모 등 경쟁을 제한하는 일체의 공동·담합행위를 금지합니다. 가격은 비용 분석 및 전반적인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독자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경쟁사의 가격정보는 공개된 자료에서 취득한 것으로서 항상 문서화하여 출처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담합행위에는 명시적·암묵적 합의뿐만 아니라 업무 정보를 단순 교환하는 경우 또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불가피하게 경쟁사와 접촉하게 되는 경우, 경쟁사와

<p>(주)아이피엔</p>	<h1>행 동 강 령</h1>	<p>문서번호 IPN-윤리-A-01</p>
<p>제정일: 2024-09-25</p>		<p>개정차수: 0</p>

가격·판매조건·생산량 등을 비롯하여 협력·지원·동조·시장 공유 및 할당의 제안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로 이해될 수 있는 언급은 하지 마십시오. 또한 만일 특정 행동이 올바른지 위법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준법지원부서에 자문을 구하십시오

유통 거래

고객·딜러·유통업체와의 계약에서 일정한 제한조건이 적법하거나 필수적인 경우가 있는가 하면, 시장제한·재판매조건 제한과 같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피엔은 거래 시 할인수준을 제한하는 것과 같이 고객에게 재판매가격유지조건을 강제하지 않으며, 특정 재판매 가격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고객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딜러·유통업체 등에 다른 종류의 제한을 두거나, 기존과 다른 형태의 유통방식이나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준법지원부서에 관련 자문을 구하십시오.

사업 파트너

공정거래 이슈는 사업 파트너 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이피엔의 모든 사업 파트너들은 제품의 구입 및 판매·가격책정·거래상대방 설정 등에 대해 독자적으로 사업상의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자율적 결정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피엔은 불공정한 경쟁방법 또는 기만적인 행위·관행을 배격하고 투명한 거래조건 아래 사업 파트너와의 상호이익을 보장하는 거래관계를 지향합니다. 아이피엔과의 모든 거래기회는 평등하게 부여되며, 체결되는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공정거래법에 대한 인식

공정거래법 위반 시, 내부적인 징계조치는 물론 심각한 범죄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쟁 당국 또는 사법기관의 조사 시 공무 집행 방해 역시 심각한 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유념하여야 합니다.

<p>(주)아이피엔</p>	<h1>행 동 강 령</h1>	<p>문서번호 IPN-윤리-A-01</p>
<p>제정일: 2024-09-25</p>		<p>개정차수: 0</p>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들은 공정거래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공정거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정기적인 내부 모니터링 및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특히, 각 사업부에서 가격 책정 및 고객 판매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조사협조

경쟁당국은 공정거래법 준수 여부의 감독을 위해 각 사업장을 사전 통지없이 방문하여 조사하고, 필요한 문서 제출 및 직원 인터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이피엔 임직원은 조사 과정에서의 공무집행 방해가 심각한 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경쟁당국 및 사법기관의 정당한 자료요구 및 질의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조사대응과 관련하여 준법지원부서의 자문을 받으십시오.

5.2 회계·세무

원칙

아이피엔은 정확한 회계처리 및 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유지하며, 납세의무를 성실히 준수합니다.

회계기록의 정확성

담당 임직원은 국제회계기준(IFRS) 및 일반적 회계 원칙에 따라 회계기록을 정확하게 작성하며, 관련 사규 및 내부통제시스템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아이피엔은 문서의 위·변조 또는 기타 사업활동의 본질을 왜곡되게 표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며, 해당 국가의 공시규정을 준수합니다.

재무공시

아이피엔은 재무정보 작성시 예측가치와 확인가치를 반영하여 목적적합성을 추구하며,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도록 충실하게 표현합니다. 담당 임직원은 아이피엔의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에게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재무보고서를 비교·검증가능하며, 적시에 이해가능하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p>(주)아이피엔</p>	<h1>행 동 강 령</h1>	<p>문서번호 IPN-윤리-A-01</p>
<p>제정일: 2024-09-25</p>		<p>개정차수: 0</p>

세무

세무 리스크는 신규투자·사업내용의 변경 및 구조조정·국제거래 등 사업활동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이피엔은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각국 법규에 따라 세무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며, 과세당국과 투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자료제출·조사협조에 성실히 응합니다. 또한 국제조세회피 등 일체의 위법한 탈세행위를 배격하며, 계열사 간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회사의 이전가격정책과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5.3 관세

원칙

아이피엔은 관세와 관련된 회사의 모든 정보를 최신의 정확한 정보로 유지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품목분류 및 관세평가

담당 임직원은 해당 국가 HS 코드의 출처 및 품목분류고시 유효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관세 평가시 부정확한 가액평가나 방법을 기준으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수입제품의 가격신고에 있어 관련된 로열티, 개발비, 실제지급비용, 생산지원비용 등 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할 사항에 대해 지급 전 관련부서에 자문을 구하십시오.

반덤핑·상계관세

아이피엔은 적정가 이하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부적절한 정부보조를 통해 수출을 장려하는 등 제품 덤핑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반덤핑이나 상계 관세는 원산지에 따라 결정되며, 담당자는 관세 회피를 위하여 제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보고하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관세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잠재적 반덤핑 및 상계관세 문제로 외부로부터 정보공유 요청을 받을 경우 준법지원부서에 대응관련 자문을 구하십시오.

<p>(주)아이피엔</p>	<h1>행 동 강 령</h1>	<p>문서번호 IPN-윤리-A-01</p>
<p>제정일: 2024-09-25</p>		<p>개정차수: 0</p>

원산지 및 자유무역지구(FTZ)

FTA 혜택적용을 위한 원산지는 개별 FTA 의 요구사항 및 기준에 따라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하십시오. 담당자는 정보 입력시 해당 정보의 출처와 신뢰도를 확인하고, 원산지 증빙서류 및 수출입거래기록 등 관련 문서를 절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세와 관련된 문서의 일자를 소급 적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는 것은 형사 또는 징계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재수출을 목적으로 무관세를 적용받는 자유무역지구(FTZ)의 작업과 관련하여, 아이피엔은 FTZ 로 유입된 제품이 허가된 목적으로만 사용되거나 재수출되도록 관련 법규와 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처리하며, 담당자는 법령에 따라 규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역시장으로 FTZ 제품을 유입시켜서는 안 됩니다.

공급망 보안

아이피엔은 공급망 보안 기준을 준수하며, 통관관리 담당자는 테러에 대항하는 미 세관 무역 파트너십(C-TPAT) 요구사항과 각국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AEO) 및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의 자격조건을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관세감사

아이피엔은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의 적정여부와 수출입 관련 법령 준수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세관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전예고 없이 진행되는 관세 당국의 관세조사나 현장 방문 및 비정상적인 관세 감사가 있는 경우 준법지원부서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소환장·질문서에 회신하거나 관세청 조사에 답변하기 전 준법지원부서의 자문을 구하십시오.

6. 공동체에 대한 책임

6.1 고객·주주

원칙

<p>(주)아이피엔</p>	<h1>행 동 강 령</h1>	<p>문서번호 IPN-윤리-A-01</p>
<p>제정일: 2024-09-25</p>		<p>개정차수: 0</p>

아이피엔은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의 만족을 실현시키며, 투명한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아이피엔의 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합니다.

고객만족 추구

아이피엔은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며 고객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고객이 필요로 하는 최고의 상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적기에 제공하고, 고객의 제안·불만사항은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주주이익 보호

아이피엔은 기업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주주의 이익보호에 힘쓰며, 주주의 정당한 요구 및 권리행사를 존중합니다. 경영효율 극대화로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유지함으로써 주주 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며, 이를 위해 주주권익보호 담당위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재무적 변동 등 주요 경영정보는 적법한 절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모든 주주·이해관계자에게 동일한 시점에 투명하게 공시될 것입니다.

지배구조

아이피엔은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지향합니다. 이사회는 경험·자격·다양성을 고려하여 구성되며, 감사위원회 및 외부감사에 의한 독립적인 감독이 보장됩니다. 내부통제시스템 및 보고체계에 따라 회사의 자산 및 주요 운영상황은 경영진과 이사회에 정확하고 시의적절하게 보고되며, 모든 아이피엔 임직원은 내부통제규정을 준수하고 이에 의거한 감사·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6.2 사회공헌

원칙

<p>(주)아이피엔</p>	<h1>행 동 강 령</h1>	<p>문서번호 IPN-윤리-A-01</p>
<p>제정일: 2024-09-25</p>		<p>개정차수: 0</p>

아이피엔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지속적 발전을 추구하며, 문화·복지사업 등 공익활동을 통해 사회에 공헌합니다.

공유가치 창출

아이피엔은 경영활동을 CSV(Creating Shared Value)전략과 연계하여 추진합니다. 기업의 존재 목적에 있어 사회적 책임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며, 여기에는 회사의 제품·기술개발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전 분야가 포괄됩니다. 아이피엔은 지역사회의 장기적·긍정적 변화 지향을 위해 다양한 현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아이피엔 임직원 또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공익활동 수행

아이피엔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기부·공익활동을 수행합니다. 자동차부품기업의 특성과 강점을 활용한 지원사업 및 캠페인을 진행하며, 다양한 문화예술사업 및 교육활동을 후원합니다. 또한 현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인재육성, 생태복원활동 등 환경보전에 힘쓰며, 임직원의 자원봉사·재난구호 등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적극 장려합니다

6.3 환경

원칙

아이피엔은 환경보호 관련 제반 법규 및 국제협약을 준수하며,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 및 친환경 기술개발 등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 수행을 통해 사업활동 전반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환경규제 준수

아이피엔은 환경규제 요건에 부합하기 위하여 노력함과 동시에 환경법 및 환경정책에 근거한 생산활동 및 사업운명을 통해 환경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원의 사용, 폐기물 처리, 환경영향물질 배출·관리 등 일련의 환경

<p>(주)아이피엔</p>	<h1>행 동 강 령</h1>	<p>문서번호 IPN-윤리-A-01</p>
<p>제정일: 2024-09-25</p>		<p>개정차수: 0</p>

이슈가 포함되며, 이는 환경관리담당자 및 통합환경시스템을 통해 관리됩니다. 담당자는 환경경영시스템 인증기준(ISO 14001) 및 국제 재료 데이터 시스템(IMDS), 각국 규제 등의 개정사항을 살피고 적절한 기간 내에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국제 재료 데이터 시스템(IMDS)

IMDS(International Material Data System)는 자동차 산업 자문그룹에 의하여 관리되므로 IMDS 의 규정은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환경규제를 준수하는 데 있어 도움을 주는 중요한 도구로, IMDS 는 EU 규정(RoHS, WEEE and REACH), 미국 규정 및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 와 같은 특별 지역 규정을 포함한 국제 규제를 다루고 있습니다.담당 임직원은 지속적 환경규제 준수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입력된 IMDS 자료 및 각국 규제 개정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규제 대응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아이피엔의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종류의 용제는 대기 중에 쉽게 증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대기, 폐수 또는 다른 폐기물에 확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사용·확산을 계속해서 추적 관찰해야 하며 아이피엔 제품에 포함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환경영향물질 관리

아이피엔은 사업장별 환경오염 방지시설 운영 및 모니터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온실가스, 휘발성 유기화합물, 중금속, 폐수 및 폐기물 등 환경영향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에너지관리시스템을 통해 에너지 절감을 추구합니다. 여기에는 대기 및 폐수처리시설 고도화 등 환경설비의 지속적 개선 및 유해물질 저감활동이 포함됩니다.

화학물질 등 유해한 환경영향물질은 회사 규정·절차에 따른 승인 없이 처분될 수 없습니다. 환경관리담당자는 재해 및 사고로 인한 유해물질 유출 시 확산 방지에

<p>(주)아이피엔</p>	<h1>행 동 강 령</h1>	<p>문서번호 IPN-윤리-A-01</p>
<p>제정일: 2024-09-25</p>		<p>개정차수: 0</p>

필요한 조치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담당 임직원은 타 회사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부품업체들이 올바른 화학적 구성 정보를 기재하고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의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아이피엔은 신규 물질과 생산운영에 대한 분석결과를 입증하기 위한 환경평가분석이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환경규제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엔지니어링 컨설턴트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기준

아이피엔은 ISO 14001 표준을 준수·유지하고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부품과 재료를 ISO 14001 표준에 부합하는 공급자로부터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해당 설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ISO 14001 표준 및 법규에 부합하도록 설비를 운영할 것이며 ISO 인증기관으로부터 권고 또는 시정을 받은 경우, 그 권고 및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합니다.

친환경 제품·기술의 개발

아이피엔은 제품의 설계·제조·유통·사용 및 폐기의 전 과정에 걸쳐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 제품·소재 개발에 노력합니다. 환경정책은 단순한 자동차의 연비향상 및 차량 배기가스의 배출 저감을 넘어 재사용·재활용 및 재생 가능한 소재의 개발·사용, 유해물질 최소화 등 친환경기술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정부 감사·검열·점검

아이피엔 임직원은 정부의 자동차 부문 제조업체의 환경규제 준수 여부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부 관계기관으로부터 환경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감사가 착수되었거나 잠재적 환경법규 위반을 알리는 연락을 받으면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컴플라이언스 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절대로 환경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감사 또는 추정 위반 사항을 독자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p>(주)아이피엔</p>	<h1>행 동 강 령</h1>	<p>문서번호 IPN-윤리-A-01</p>
<p>제정일: 2024-09-25</p>		<p>개정차수: 0</p>

6.4 사업 파트너

원칙

아이피엔은 협력회사·공급망 전반에 엄격한 요구사항을 적용하며, 업계 전체의 기준을 높여 나갑니다.

공급망 정책

아이피엔은 공급망의 모든 단계에서 사회 및 환경적 책임을 준수하는 아이피엔의 정책이 올바르게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아이피엔은 모든 협력회사가 제품을 제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근로자를 존엄과 존중으로 처우하며,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행동하고, 환경적으로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이피엔은 협력회사가 그들의 협력회사에 대해서도 지속가능한 구매정책을 적용하기를 권장합니다.

아이피엔은 협력회사의 아이피엔 공급망 정책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미준수 사항의 개선을 추구합니다. 아이피엔이 제시하는 기준이 협력회사가 사업을 운영하는 개별 국가의 법령보다 엄격하더라도 사업관계에서 아이피엔의 기준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협력회사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아이피엔은 기준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추도록 독려합니다.

상생협력 추구

아이피엔은 협력회사와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며, 기술·경영지원 확대를 통해 공동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추구합니다. 또한 거래에 필요한 정보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적기에 상호 제공하고 거래결과는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상호 보완될 것입니다.